

HST의 도입으로 실효세율이 3.77%나 인하되었으며, Newfoundland and Labrador 주는 4.84%가 감소되었다. 세율의 인하와 과세대상의 확대는 각종 재화와 용역간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제한된 지역에서의 HST 채택은 캐나다 전역에 걸친 HST 시행 목표를 향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HST는 소비자와 영세기업에 보다 공평하고, 영세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연방정부와 지방간에 재정적 협조(fiscal co-operation)와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 HST의 장점

새로운 단일 HST는 단순·공정하고 보다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세제로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① 기업들은 HST의 시행에 따라 중간재(inputs)에 대해 주정부가 과세해온 소매세의 폐지, 세율 인하, 납세의무 이행비용(compliance cost)의 경감 등의 혜택을 입게 되었다. 이에 따른 상품 가격의 인하로 소비자들도 이익을 받게 되었다.

② 기업은 1종의 납부서식, 적용 법규의 단일화, 세무 행정의 단일화에 따라 납세의무 이행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그 외에도 기업이 사업의 중간재에 대한 HST를 환급받게 되므로 기업들간의 경쟁을 촉진하게 된다.

③ 사업의 중간재에 대한 과세를 폐지함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함께 종전의 주 소매세제에 내재하고 있던 높은 세부담을 완

화함으로써 HST는 기업의 투자 결정에 있어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

④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소비세를 과세하던 것을 단일화함에 따라 세무행정 경비(administrative costs)를 절감할 수 있다.

⑤ HST의 도입으로 조세체계가 통합되고 세율도 단일화됨에 따른 혜택도 있게 된다. 종전 Nova Scotia주와 New Brunswick주에서 적용되던 실효세율은 18.77%였으며, Newfoundland and Labrador에서는 19.84%였다. HST는 15%의 단일세율로 과세되므로 상당한 세율 인하가 이루어진 셈이다.

2) 단일 과세표준, 단일 세율, 단일 법규

HST의 주요한 요소는 단일화된 적용 법규와 서식, 단일화된 세무행정이다. 또 HST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에 대하여 단일한 과세표준과 1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HST의 운용은 기존의 재화용역세(GST)의 규정들을 흡수한 소비세법(Excise Tax Act)에 근거한다.

HST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존 GST 납부를 위해 등록을 해둔 납세자는 새로이 등록을 해야할 필요는 없다. HST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goods and services)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미시행 지역 거주자라 할지라도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HST를 납부하게 된다.

HST를 신고납부할 때 납세자는 15%의 세율 중에 포함되어 있는 연방분과 지방분